

2016. 6.14.(화) ~
6.28.(화) / 15일간

제28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 회 결 과



장 성 군 의 회

1. 장성군의회 의의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.. 3
2.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
3.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
4.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
5. 장성군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안 6
6. 장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·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7
7. 장성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8
8. 나노산단 폐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9
9. 2015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승인의 건 10
10.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2
11. 2015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2

심 사 결 과

의 안 명	의결 결과
○ 장성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	원안 가결
○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 가결
○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 가결
○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	원안 가결
○ 장성군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안	원안 가결
○ 장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·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 가결
○ 장성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	원안 가결
○ 나노산단 폐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	원안 가결
○ 2015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	원안 가결
○ 2015회계연도 장성군 각종 기금 결산안	원안 가결
○ 2015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 승인안	원안 가결

주요내용

1. 장성군의회 의의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발의일자 : 2016. 6. 7.
- 발 의 자 : 임동섭, 차상현 의원
- 제안이유
 -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문을 개정하고 상위법령의 제·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함.
- 주요내용
 - 제3조(보상금 지급대상)제1항 각 호의 구체적 인정범위에 대한 기준이 되는 법령을 명시 (안 제3조)
 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5조제4항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문을 개정 (안 제7조)
 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5조제3항제2호에서 보상심의회 구성위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는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해당 조문을 개정 (안 제9조)
 -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 “사망자의 호적등본” 를 “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” 로 변경 (별지 제1호서식)
- 법적근거
 - 「지방자치법」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6. 6. 28.)

2.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발의일자 : 2016. 6. 7.
- 발 의 자 : 장성군수

■ 제안이유

- 2013년 7월 금융위원회에서 모든 금융사의 개인용자시 연대보증 폐지 권고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용자지원 신청시 연대보증인 규정을 삭제하기 위함.

■ 주요내용

-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용자지원신청 (안 제14조제2항)
 -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지원 신청시에는 규정이 정하는 1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. ⇒ 신청시 기관·단체, 자활공동체는(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용자지원대상 연대보증여부 명시)

■ 법적근거

- 금융위원회 연대보증 폐지 방안 자료

■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6. 6. 28.)

3.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■ 발의일자 : 2016. 6. 7.

■ 발 의 자 : 장성군수

■ 제안이유

- 지방세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주민세 개인 균등분은 ‘1만원이내’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.
- 정부(행정자치부)의 1만원 상향 권고와 징세 비용의 현실화 등 세율 증가의 필요성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■ 주요내용

- 주민세 개인 균등분 세율인상 : 7천원 → 10천원(안 제6조1호가목)

■ 법적근거

- 「지방세법」 제78조제1항제1호가목, 정부(행정자치부) 및 전라남도 권고(2016.4.11. / 5.17)

■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6. 6. 28.)

4.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

▪ 발의일자 : 2016. 6. 7.

▪ 발 의 자 : 장성군수

▪ 제안이유
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▪ 주요내용

○ 장성소방서 신설부지 매입

- 재난사고에 신속대응이 가능한 지역에 소방서를 신설하여 골든 타임 확보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장성을 구축하고자 함.

○ 사업규모 : 부지면적 13,000㎡ 이상, 청사면적 3,300㎡

○ 추진방법

- 장성소방서 부지매입(장성군) 및 무상양여 (장성군→전라남도)
- 장성소방서 신축 및 소방력 확보 : 전라남도 소방본부

○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(안)

사 업 명	당 초		증 감		변경(안)	
	필지수 /동수	면적(㎡) 토지/건물	필지수 /동수	면적(㎡) 토지/건물	필지수 /동수	면적(㎡) 토지/건물
계	37필지 / 7동	658,616 / 8,380	16필지 / 1동	13,135 / 99	53필지 / 8동	671,751 / 8,479
황룡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	8필지 / 1동	1,613 / 100	-	-	8필지 / 1동	1,613 / 100
축령산 휴양관광단지 조성	6필지 / 2동	638,482 / 2,300	-	-	6필지 / 2동	638,482 / 2,300
유용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	3필지 / 1동	2,765 / 330	-	-	3필지 / 1동	2,765 / 330

사 업 명	당 초		증 감		변경(안)	
	필지수 /동수	면적(m²) 토지/건물	필지수 /동수	면적(m²) 토지/건물	필지수 /동수	면적(m²) 토지/건물
실증 시험포장 부지 매입	4필지	6,524	-	-	4필지	6,524
북부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	5필지 / 1동	5,153 / 800	-	-	5필지 / 1동	5,153 / 800
공공살버주택 및 살버복지관 건축	11필지 / 2동	4,079 / 4,850	-	-	11필지 / 2동	4,079 / 4,850
장성 소방서 신축	-	-	16필지 /1동	13,135 / 99	16필지 /1동	13,135 / 99

○ 세부내용

- 장성소방서 신설부지 매입(재난안전실)

구분		필지수/동수	면 적	추정가격	비 고
취득	계	16필지 / 1동	13,234	1,200,000	
	토 지	16필지	13,135	1,050,000	
	건 물	1동	99	150,000	

■ 법적근거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-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6. 6. 28.)

5. 장성군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안

- 발의일자 : 2016. 6. 7.
- 발 의 자 : 장성군수
- 제안이유

- 감염병에 대한 적기예방접종 및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함.

- 주요내용

-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사항(안 제5조)
-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사항 (안 제12조)
 -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

- 법적근거

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6. 6. 28.)

6. 장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·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발의일자 : 2016. 6. 7.

- 발 의 자 : 장성군수

- 제안이유

-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별표3 사업구분 4호에서는 소득증대사업·복리증진사업·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금의 용도를 구체화 하고자 함.

- 주요내용

- 기금의 용도(제7조 별표 1)

- 별표 1의 사업구분 4호 기타사업

- 가. 마을발전기금

- 나. 주민건강에 대한 지원 (건강진단비, 방역약품 구입 등)

다.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지원

라. 그 밖에 소득증대, 복리증진, 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업

■ 법적근거

○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

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(주변영향지역 지원 등)

■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6. 6. 28.)

7. 장성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

■ 발의일자 : 2016. 6. 7.

■ 발 의 자 : 장성군수

■ 제안이유

○ 최근 환경부의 실시간 방류수질 기준 감시와 재재조치가 강화되고 시설운영에 대한 예산이 과도하게 증가되는 추세로,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처방안으로 전문기술과 운영기법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처리시설위탁 안정적인 방류수질 확보와 시설운영에 대한 예산을 절감코자 함.

■ 주요내용

○ 위탁사유

- 환경부의 민간위탁 권고 : 현재 관리대행으로 운영·관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전국 587개소의 76.1%인 447개소로써, 우리군도 효율적인 운영과 적정방류수질 확보를 위해 민간 위탁 권고
- 실시간 방류수질 규제 및 행정처분 강화로 적정수질 확보가 요구되어 전문기술력과 운영기법이 앞선 민간업체에 시설을 위탁 안정적 처리수질 확보와 전문적인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함.

- 위탁범위
 - 위탁구분 : 단순위탁
 - 위탁사항 : 유입수의 법적 기준 내 처리 후 방류, 처리장시설물 관리, 수처리 후 발생슬러지 처리, TMS관리, 시설물 내 조정관리, 실험을 위한 유입수 방류수 채수 및 운반, 전기 및 제어설비 운영관리
- 법적근거
 - 지방자치법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 - 하수도법 제19조(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)
 -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(환경부고시-1802호)
 - 장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(위탁대상 사무의기준 등)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6. 6. 28.)

8. 나노산단 폐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

- 발의일자 : 2016. 6. 7.
- 발 의 자 : 장성군수
- 제안이유
 - 위탁사유
 - 환경부의 민간위탁 권고 : 현재 관리대행으로 운영·관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전국 587개소의 76.1%인 447개소로써, 우리군도 효율적인 운영과 적정방류수질 확보를 위해 민간 위탁 권고
 - 실시간 방류수질 규제 및 행정처분 강화로 적정수질 확보가 요구되어 전문기술력과 운영기법이 앞선 민간업체에 시설을 위탁 안정적 처리수질 확보와 전문적인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함.
 - 위탁범위
 - 위탁구분 : 단순위탁

- 위탁사항 : 유입수의 법적 기준 내 처리 후 방류, 처리장시설물 관리, 수처리 후 발생슬러지 처리, TMS관리, 시설물 내 조경관리, 실험을 위한 유입수 방류수 채수 및 운반, 전기 및 제어설비 운영관리

■ 법적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- 하수도법 제19조(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)
-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(환경부고시-1802호)
- 장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(위탁대상 사무의기준 등)

■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6. 6. 28.)

9. 2015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승인의 건

■ 제출일자 : 2016. 5. 10.

■ 제출자 : 장성군수

■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5회계연도 장성군 세입·세출 결산을 장성군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장성군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함

■ 주요내용

○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

- 예 산 현 액 : 4천 742억 2천 2백만원
- 세입 결산액 : 4천 862억 6백만원
- 세출 결산액 : 3천 276억 5천 4백만원

○ 이월금 결산

- 이 월 총 액 : 1천 485억 5천 2백만원
- 명 시 이 월 : 391억 4천 7백만원

- 사 고 이 월 : 448억 8천 2백만원
- 계속비 이월 : 61억 1천 6백만원
- 국·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: 64억 3천만원
- 순세계 잉여금 : 519억 7천 6백만원

○ 채권 결산

- 채 권 총 액 : 47억 5천 2백만원
- 회계별
 - 일 반 회 계 : 36억 9천 3백만원
 - 특 별 회 계 : 10억 45천 6백만원
 - 사회복지기금 : 1천 3백만원
- 내역별
 - 보증금채권(전화선예치) : 9백만원
 - 융자금채권(학자금, 주택, 주민소득지원, 영세민생활안정자금) : 45억 3천 8백만원
 - 미수금채권(삼계택지 환지청산금) : 3억 6천 4백만원

○ 채무 결산

- 채무총액 : 108억 8천 7백만원
- 하수슬러지처리 : 1억 3천 9백만원 (국비 100%)
- 농공단지 조성, 드림빌 사업 : 107억 4천 8백만원(수요자 100%)
- 순수 군비부담 채무 : 없음

○ 공유재산 결산

- 공유재산 평가액 : 6천 948억 9천 2백만원
 - 행정재산 : 6천 844억 6천 4백만원
 - 일반재산 : 104억 2천 8백만원
- 토 지 : 2천 157억 6천 6백만원
- 건 물 : 1천 783억 1천 2백만원
- 입목죽 : 38억 2천 5백만원 (가로수, 관상수, 조림)

- 기타 : 2천 966억 8천 9백만원
- 물품 결산
 - 현재액 : 49억 8천 7백만원
- 법적근거 :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 제1항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6. 6. 28.)

10.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

- 제출일자 : 2016. 5. 10.
- 제출자 : 장성군수
- 제안이유
 - 「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장성군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」
- 주요내용
 - 예비비 결산
 - 예산총액 : 196억 2천 6백만원
 - 지출총액 : 1억 1천 5백만원
 - 중동호흡기 감염병 예방사업비 : 4억 1백만원
 -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이동초소 운영비 : 7억 3백만원 등
- 법적근거 : 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6. 6. 28.)

11. 2015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

- 제출일자 : 2016. 5. 10.
- 제출자 : 장성군수
- 제안이유
 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5회계연도

장성군 각종기금 운용 결과에 대하여 장성군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자 함」

■ 주요내용

○ 기금 결산

- 당해연도 조성액 : 7억 2천 2백만원
- 지출액 : 3억 7천
- 2015년 말 현재 조성액 : 62억 9백만원

■ 법적근거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제2항

■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6. 6. 28.)